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등록 취소·지원 중단 근거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1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등록 취소·지원 중단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7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별표 1]) ...	7
2. 환경컨설팅업 개요	9
3. 환경컨설팅업 등록 현황	10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Ⅲ. 검토의견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등록 취소·지원 중단 근거 마련

현행법은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등록일부터</u>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u>정당한 사유 없이</u> 등록일부터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인력요건¹⁾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인력 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참고자료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현행법은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는데,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등록 취소 또는 지원 중단을 규정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등록 취소 또는 지원 중단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컨설팅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등록·인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⁴⁾.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⁵⁾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관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환경건설팅회사의 인력요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별표 1])

환경건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구분	인력기준
1. 고급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추는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외의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환경 외의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차.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일반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추는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비고

1.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지하수를 포함한다),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을 포함한다),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환경 분야 업무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고급인력으로 환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 직무분야 건설기술인은 일반 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환경컨설팅업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7 등
- **(현황)** 452개 업체 등록('24.12 기준)
 - * 전체 등록회사의 71.9%인 325개사가 수도권에 분포

□ 등록 및 관리

- **(등록대상)** 환경컨설팅*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
 - *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환경 인허가 등 대행, 환경산업체 창업 및 운영 진단·조사·교육,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 사업장의 환경성 진단 등
- **(등록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등록요건)**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인력 1명, 기사 등 일반인력 2명 이상 보유
- **(관리)** 시·도지사가 등록요건,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환경컨설팅 수주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등을 환경부 보고(매년 2월)
 - **(등록취소)** 부당·거짓으로 등록,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 법 제16조의6에 해당 될 경우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증 대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제도 연혁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 도입(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5.12.)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절차 규정('06.6.)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업무를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시·도로 이관('11.1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으로 법 명칭 변경('11.10)
- 환경컨설팅사 등록시 민간경력 인정으로 인력요건 완화(동법 시행령 개정, '20.3.)

3. 환경컨설팅업 등록 현황

□ 시·도별 환경컨설팅업 등록 현황('24.12.31기준)

○ 지역별 등록 현황

(단위 : 업소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울산
452	165	12	6	22	10	10	138	1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제주
7	11	15	10	11	3	13	9	-

○ 연도별 등록 추이

(단위 : 업소수)

연도	등록현황(개사)	전년 대비 증감수(개사)	전년 대비 증감률(%)
2014	132	-	-
2015	153	21	15.9
2016	181	28	18.3
2017	172	△9	△5.0
2018	208	36	20.9
2019	261	53	25.5
2020	282	21	8.0
2021	320	38	13.5
2022	341	21	6.6
2023	387	46	13.5
2024	452	65	16.8

□ 환경컨설팅회사 주요 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